

~~2004년 10월 30일~~ 2004년 10월 30일

학생회 법제화를 위한 간담회

2004년 10월 30일

일시 : 2004년 10월 30일 일요일 3:00 ~ 6:00

간담회
2004년 10월 30일

장소 : 국회 또는 민노당(중앙당)

주최 : 학생회 법제화를 위한 연대회의(민노당 청소년위원회, 최순영 의원실, 전교조, 희망, 새늘)

대상 : 법제화에 관심있는 청소년 누구나, 교사, 청소년단체 일꾼, 민노당 준비위원, 의원실, 당원 등

프로그램

연상생 (희망)
연상생

3:00 ~ 3:30 개회 및 간단한 자기 소개

3:30 ~ 4:00 법제화와 관련한 경과와 현재 상황 공감하기

사담

4:00 ~ 5:00 청소년의 발언 시간

- ▶ 학교에서 학생회 활동이 이래서 힘들다!
 - ▶ 학생회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
 - ▶ 학생회 법제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 등등...

간담회 자료집
Le 자료, 제본

5:00 ~ 5:30 질의 응답 및 마무리

사담

~~간담회 자료집~~
~~간담회 자료집~~
간담회 자료집
간담회

연상생 - 희망
연상생 - ~~연상생~~ 김국신 학생
연상생 - 연상생, 연상생, 연상생
연상생

연상생 - 희망

1. 학생회 법제화와 관련하여

<풍문여고 학생회칙 사례>

제5절 학생 지도위원회

제28조 (구성)

1. 학생 지도위원회는 교장, 교감, 각부 부장 및 학생회 담당 지도 교사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학교장, 부위원장은 교감, 특별부장을 간사로 한다.
3. 학생회 담당 지도위원을 1명 이상 둔다.

제29조 (기능) 학생 지도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지도한다.

1. 학생회의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2.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지도에 관한 사항
3.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학생회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5. 예산, 결산, 감사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실제 학급회의, 학생회운영위 전체를 포괄하는 대의원회의의 결정사항을 지도위원회가 결정짓거나 관여하는 상황이 현실이다. 실제로 실권은 대의원회가 아니라 학교장 또는 학교측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개선방향은

1안.

대의원회 회의 결정사항이 전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성)에서 지도위원회를 폐지하거나 또는 그 위상을 대의원회 참관 정도로 낮추도록 한다.

2안.

대의원회 결정사항을 지도위원회와 대의원회 대표가 공개 협상하는 방안.

등등 이라고 생각되나 아직은 생각이 짧고, 현실 가능한 선이 어느 정도인지는 더 토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풍문여고 사례가 일반적 사례로 보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풍문여고는 대의원회의나 학생회 활동을 활발히 하는 측면이지만 대부분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활동이 없거나 대의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어 법제화하는 것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2. 명목뿐인 학생회 지위 향상을 위한 여론화와 법적장치를 마련한다.

‘학교운영위 내에 학생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해야한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형식적인 학생회로서, 학생들의 대표기구로서의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학급회의나, 대의원회 안전조차도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으며, 그나마 학생이 자유롭게 토론한 안전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묵살하는 학교가 대다수이다.

이 점이 학생회 활동을 하는 간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점이다.

“학교의 당당한 주인이 되자!”

- 학생회 법제화 간담회

1. 간담회의 의미,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2. 참가자 : 70명 (가22), 서울외고, 신원중, 이화여고, 개포고,
새빛 - 학생회 (20명), 45명, 복복기회2명, 준비위원 (8명),
총 200명.

3. 프로그램

3 : 00 - 3 : 30 개회 및 간단한 자기 소개 [사회자]

3 : 30 - 4 : 00 법제화와 관련한 경과와 현재 상황 공감하기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영상 내용, 완성정도 점검

4 : 00 - 5 : 00 간담회 순서 [사회자]

- 이런 것 때문에 학생회활동 어렵다?!
- 학생회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
- 학생회 법제화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5 : 00 - 5 : 30 질의 응답

4. 준비사항 : 간담회 제목글씨 뽑아 붙이기, 간단한 다과, 그 외....

203

- 양력비중
- 석산 (비중)
- 전의대고

▣학생회 자료집 기획안▣

1. 학생자치활동의 필요성 및 의의 ----- 김정옥 (토론회 자료집)
2. 학생자치활동의 역사
 - 1) 자치 학생회 건설의 역사(총론) ----- 구정인 (희망 간사)
 - 2) 풍문여고 자치 학생회 건설 과정 ----- 김소령
 - 3) 성동여실 4대 학생회 활동 사례 ----- 연비림 (희망 간사)
 - 4) 기타 : 경북여고, 성남고, 동일여고
3. 학생회 활동 사례
 - ▶ 3)-9) 부분은 사례별로 묶어서 각각의 활동에 관한 기본 내용과 원칙 등을 서술한 후, 풍문, 인명, 사직, 장승 등 모아진 자료를 바탕으로 '사례1', '사례2' .. 등으로 소개한다.
 - ▶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한다.
 - 1) 민주적 운영과 리더쉽 (총론) ----- 안승문
 - 2) 학생회, 이렇게 하면 두배로 잘 할 수 있다. (총론) ----- 강경해
 - 3) 학생회 구성 및 회의체계, 운영체계
 - 4) 기념행사 : 4 19, 5 18, 학생의 날
 - 5) 일상사업 : 홍보활동, 봉사활동, 의거수렴을 위한 활동, 학교 행사 진행 등
 - 6) 선거
 - 7) 축제 - 인명여고(전지현) 등
 - 8) 용의복장 규정 개정 - 장승중 등
 - 9) 기타 - 학생회 일꾼 내부 결속 다지기 프로그램(단합, 교육..), 바람직한 선배의 역할 (이월과정)
4. 학생회 활동의 어려움과 극복과정
 - 1) 설문조사 + 우리 학생회, 이대로 좋은가 ----- 김정옥, 최진영, + 황두영
 - 2) 학생회 활동의 어려움 Q&A ----- 김한영
 - 3) 신징여상 투쟁사례 ----- (? , 백성균 청탁중)
5. 자치학생회 활성화를 위한 제언
 - 1) 학생회칙 - 문제점과 모범 회칙 ----- 김한영, 최진영 + 전지현
 - 2) 학생의 학운위 참여 ----- 손순희
 - 3) 학생회 법제화 ----- (?) *한영*
 - 4)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역할 ----- (? , 김남희 지상중계)

석산 / 설문비용 : 30만원
 김진영 : 1400
 25-128
 17.10
 17.10
 17.10

○ 학생의 눈 → / 이항진 - 설문조사 실시하는 게 아니라,

* (?) 별반 아직 원가 ~~없~~은 부분입니다. 설문 결과도 그렇고요.
 자료는 [로컬러 자료집, 자치학교 자료집, 여중 여고 학교자료집] 에서 뽑을 것이고, 자치학교, 여중학교 자료집과 기획안은 곧 cafe에 띄워드립니다. 꼭 연락드림께요.
 - 이기재 드림

청원고 학생회 사례

▷교칙만이라도 ...

현재의 청원고 학생회는 교칙에 무시되어 있는 권리조차 지키지 못한다. 우선, 가장 큰 문제가 예산안 문제인데, 교칙에 따르면 학교의 학생회비예산을 학생회에서 자치적으로 편성하고 결산해야 한다고 쓰여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현재의 학생회는 학생회예산이 정확히 얼마인지도, 어디에 쓰이는지도 알지 못한다. 본래 대의원회의, 그러니까 각반 정회장, 부회장 등이 모이는 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그것을 이행할 수 있다고 교칙에 쓰여있으나 대의원 그 누구도, 회장조차도, 그것을 안건으로 상정한 적도, 본적도 없다. 건의도 해 보았지만, 들어줄리 없었다. 자신들이 만든 교칙조차 지키지 않는 그들에게 무엇을 바랄 수 있을까?

▷게시판. 이렇게는 안 되는데..

학교 2에서 나오는 대자보문화. 청원고에서는 꿈같은 이야기이다. 청원고 모든 게시판은 학생부의 도장이 찍혀있는 것들만이 한 구석의 자리를 메울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게시판에 붙이는 모든 학생이 알아야 할 이야기들은 모두 학생부에 검토를 거쳐 도장이 찍혀야만 게시판에 붙여지는 것이다. 청원에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학생들에게 알리고 싶은 학생회의 입장을 솔직히 말할 수 없다. 따로 학생회 게시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생회에게 특별한 권한이 없기에, 회의 내용이나 건의사항 또는 그것의 결과 등을 학생들에게 알릴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학생회의 활동이 학생들에게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학생회의 활동은 지지할 수 없고, 지지 받지도 못하는 학생회는 그 힘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자율 부서가 아니었나?

청원고의 지도부. 영선부. 이 부들은 학생의 자율적인 학교생활을 위한 부서로서, 지도부는 학교내의 복장 행동을 단정히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돕는 부서이며, 영선부는 학교 안의 파손된 물품을 점검, 건의하는 일을 맡고 있다. 물론 이 같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율적인 행동과 타율은 좀 다르다. 아침에 지도부가 정문에 서서 학생선도를 하고 있으면, 언제나 서 있는 선생님 한 분을 볼 수 있다. 그 분께서 들고 있는 긴 막대기 앞에 엎드린 아이들이 몇 명 있고, 그들의 표정은 좋지만은 않다. 도대체 그 선생님은 무슨 이유로 그것에 계신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확실한 것은 그분이 자율 부서를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주춧돌 없는 기둥, 지붕 받히기.

학급회의조차 되지 않는 학교에서, 대의원회의가 힘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가? 대의원회의는 각 학급의 회장들이 모인 자리로서, 각 학급의 의견을 반영한다. 하지만, 학급회의가 되지 않아서 그들의 의견이 사라지면, 대의원회의는 무력해지는 것이다. 의견의 결집은 대의원뿐만 아니라, 운영위원회인 학생회에게도 큰 타격이다. 대의원회의의 무력함은 곧 학생회에 이어지고, 권리의 표현으로 이어진다.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지금 청원고등학교이다. 대부분의 반이 그 시간에 자율학습으로 시간을 죽인다. 의제를 각 반 회장들에게 전달하여도, 의제에 대한 회의가 되지 않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학교의 학생들의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첨부자료>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 자치활동사업부에서

학생회 현실과 문제점, 그에 따른 사업계획

1. 현재 학생회 활동의 현황과 문제점

① 주체적인 학생회 활동에 대한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두발, 용의복장규정에 대한 학생, 교사간의 설문조사, 공개토론회 등의 학생회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수는 아니지만 학생회 임원으로서의 책임감, 주체적 활동에 대한 열의가 높아졌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형식적인 학생회로 존재, 학생회 활동을 지원하기 하기 보다는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회의 위상을 올바르게 정립, 학생회의 힘을 키우고 연대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흐름들이 생겨났다.

② 학생회 대표기구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

2000년 4월 북부지역 12개 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통계를 보면 몇몇 학생회 임원들의 주체적인 흐름에 비해 학생회 활동은 아직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표는 학급회의 때 결정된 사항의 반영정도를 조사한 것이다.

반영 15.2%인 반면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48%에 이른다. 학교에 의견이 관철되지 않아 학생회 불신, 의욕적인 학생 임원들도 이런 현실에 부닥쳐 활발한 활동을 벌여내지 못하고 있다.

	학급 회의		학생회		특별활동 방과후활동	
	학생	교사	학생	교사	학생	교사
많이 반영된다	1.7	5.7	3.0	4.5	9.8	20.5
어느 정도 반영	13.5	38.6	22.2	35.2	23.9	33.0
그저 그렇다	36.1	31.8	38.7	39.8	29.3	23.9
거의 반영 안 됨	31.3	21.6	24.1	17.0	19.8	19.3
전혀 반영 안 됨	16.7	0	11.3	2.3	17.2	3.4
무응답	0.7	2.3	0.7	1.1	0	0
계(%)	100(460)	100(88)	100(460)	100(88)	100(460)	100(88)

③ 실적적인 학생회 활동의 내용성·학생회운영의 노하우가 부재하다.

과거 학생회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활발히 움직이는 학생회를 탄압했던 경험에 비추어 보면, 현재

는 기존의 학생회 자질을 단적으로 평가했던 성적제한철폐, 제한적이거나 직선제로의 변화, 수시지원에 활동 반영 가산점이 붙는 등, 학생회 활동에 뜻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후보로 출마, 학생들의 손을 거쳐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학생회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도 학생회가 무엇을 해야할지 뚜렷한 상을 잡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의 대표기구로서의 학생들을 위한 활동들을, 어떻게 벌여내야 할지 모르고 있는 학생회들에게, 모범적인 학생회 활동의 사례들을 널리 알려내어, 작더라도 사업을 잡고 학생들을 위하여 꾸준히 시도하는 학생회를 만들어야 한다.

학생회 교실을 진행하면서 가장 호응을 받고 질의응답과 토론이 많았던 부분도 타학교 모범운영 사례 시간이었다.

2. 학생회 활동에 대한 대안과 사업방향

① 학생회 활동을 활발히 벌이기 위한 구체적 활동을 제시하고 교육한다.

교육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로, 학생회 간부가 되긴 했으나 그에 걸맞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자각하지 못하는 학생회 임원들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다.

둘째로, 의욕적으로 학생회 활동을 하려는 마음은 있으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학생회 임원들을 위하여 필요하다.

1차 학생회교실 9개학교 20여명의 학생들과 진행해 본 결과, 이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학생들에게 가장 호응을 받았던 것은 부산 사직여고, 서울 풍문여고 학생회 구체적 사례를 듣고서

- 각자의 학교에 맞는 사업을 찾아서 시도해 볼 수 있겠다는 점,
- 매년 부딪히는 학교와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
- 학생회 운영과 토론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 학생회 간부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실례를 들어가며 이야기했던 프로그램이 좋았다는 평가를 볼 수 있었다.

또한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으로서

- 학생회 활동에 대한 필요성과 책임감을 느낀 것,
- LT를 가서 학생회 일년나기와 공약을 가지고 모의 선거를 해보았던 것 등이 매우 반응이 좋았으며,
- 이후 학생회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앞으로 교육사업은 학생회 활동의 모범사례를 더 많이 모아서 전파하고, 민주적 운영과 리더가 갖춰야 할 자세 등을 통하여 학생회 간부를 양성하는 사업과, 선거나 축제시기에 이런 사안별 특별강좌 등을 열어나갈 것이다.

② 명목뿐인 학생회 지위 향상을 위한 여론화와 법적장치를 마련한다.

‘학교운영위 내에 학생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해야한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형식적인 학생회로서, 학생들의 대표기구로서의 지위를 보장받지 하고 있다.

학급회의나, 대의원회 안건조차도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으며, 그나마 학생이 자유롭게 토론한 안건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묵살하는 학교가 대다수이다.

이 점이 학생회 활동을 하는 간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점이다.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없는 이러한 구조로 인해 학생들에게는 신뢰받지 못하고, 매순간 학교와 부딪히고 싸우는 과정에서 의욕적으로 활동했던 간부들이 지쳐 떨어지고 있다.

현재 학교마다 구성되어있는 학교운영위는 공립과 사립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학교운영위에서 다루는 학교운영 전반에 교사, 지역위원뿐만 아니라 교육의 한 주체인 학생대표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다.

학교운영위가 다루는 사안들 중 특히 학생회칙이나 예산안(그 중 학생회비, 동아리와 CA 지원비, 축제비 등은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등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되고 있는 학생들을 제외하고 논의한다는 것은 말이 안될뿐더러, 이미 두발규제에 대한 토론을 학생들이 이미 벌였거나 벌이고 있는 현실에서 학운위에 학생대표가 참여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학운위에 대한 학생대표 참여는 이미 전교조나 학부모 단체가 요구, 교육부와 교섭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각 학교 학생회가 이 사안에 대하여 연대하여 공청회나 성명서발표 등을 조직적으로 요구하고, 법제화 할 것이다.

③ 지역 학생회연합모임을 보다 넓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하여 지원, 지지해준다.

학생들의 권리의식의 향상으로 전반적으로 학생회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자각도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가진 학생들이 좁게는 구별로, 넓게는 시도별로 연대모임을 형성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의미 있고, 발전적인 일이다.

그러나 실제 이 모임들의 현실은 친목이상의 단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생회 활동에 대한 교류와 연대하여 학생회 활동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하는 이러한 모임은 이미 길게는 7-8년 전부터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대모임이 초기의 필요성과는 달리 타학교 축제 참여, 낮은 수준의 정보교류차원 정도의 사업으로 그쳐 학생회 활동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하지 못하고 친목 이상의 수준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결국 조직은 되어 있지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 내용성을 잡아내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을 한해 곳곳에 만들어지고 있는 연합모임을 보다 통크고, 폭넓게 묶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청소년 스스로가 만든 학생회 조직이 좀 더 발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이다.

영신여자고등학교 학생회칙

제 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영신여자고등학교 학생회라 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는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치 능력의 배양으로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본교 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중이거나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중 회원으로서의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제 4조 (권리, 의무)

이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5조 (금지활동)

이 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 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장의 행정 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

제 6조 (지도기구)

본 회의 건전한 운영지도를 위하여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지도위원회를 둔다.

제 7조 (기능)

본 회의는 제 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1.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신장에 관한 활동
2. 정서 함양,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3. 학교의 전통, 향통의 민속,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4. 선교활동 및 봉사활동
5. 각종 재난시 방재 및 지원활동
6. 기타 학칙과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1) 본 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과 본 회의 회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하며, 사전에 학생 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한다.

2) 제 1항의 활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생회 지도위원회는 이 회의 예산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 할 수 있다.

마) 방송부는 봉사정신과 방송 운영능력이 뛰어난 학생,

제 13조 (임기)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당년 9월 1일 부터 다음해 8월 30일 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중이라도 학교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고, 잔임기간 동안 재임한다.

제 3 장 대 의 원 회

제 14조 (구성)

대의원회는 학생회의 의결기구로서 회장, 부회장 및 학급의 반장, 부반장으로 구성한다.

제 15조 (기능)

대의원회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사업 계획의 심의 및 결산보고의 승인
- 2) 학생회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3)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토의
- 4) 운영위원회 인준에 관한 사항

제 16조 (회의 및 임원선출)

- 가) 대의원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소집한다.
나) 정기회는 한 학기에 2회씩 회장이 소집한다.
다) 임시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2.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3.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때
 4. 학생자문위원회의 요구가 있을때
- 라) 대의원회의의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마) 대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안건을 작성하여 적어도 회의 1일전에 학생자문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바) 학급반장, 부반장은 다음 자격을 구비한 학생으로 한다.
1. 성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학업성적은 관계없음
 3. 학교내의 봉사활동 이상의 징계 또는 유급을 받은 사실이 없는자
 4. 학급부회장은 2명을 둔다. (학습담당 부회장, 선교담당 부회장)
- 사) 학급회장 및 부회장은 해당 학급학생들에 의해 직접선거를 하며, 학급회장의 임기는 학기제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단, 선교부장은 제외함)

제 4 장 운 영 위 원 회

제 17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의 집행기구로서 학생회장, 부회장, 각부의 부장 및 차장으로 구성

한다.

제 18조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학생회의 업무 진행에 관한 사항
2. 예산 편성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대의원회의에 부여할 안전에 관한 사항
4. 대의원회에서 위임 및 요구사항
5. 기타 운영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제 19조 (회의)

가) 운영위원회는 회장 또는 학생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나) 운영위원회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가 부 동수 때에는 회의 의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자 문 위 원 회

제 20조 (구성)

1. 학생지도위원은 교장, 교감, 각부 부장 및 학생회 담당 지도교사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학교장, 부위원장은 교감, 생활지도부장을 간사로 한다.
3. 각부에 지도위원 1명 이상을 임명한다.

제 21조 (기능)

가) 학생 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한다.

1. 학생회의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2.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지도에 관한 사항
3. 회칙의 개정, 제정에 관한 사항
4. 학생회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5. 회비의 책정에 관한 사항
6. 예산, 결산, 감사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전 항의 지도는 사전 사후의 지도를 모두 포함한다.

제 6 장 재 정

제 22조 (예산)

1. 본 회의 필요 경비는 '학교 운영 지원 회계'에서 지원한다.
2. 회비의 수납 및 지출 등에 관한 사무 처리는 학교 회계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담당하고, 예산을 지출 할 때에는 학생회 담당 지도 교사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제 23조 (회계년도)

학생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3월 1일 부터 다음해 2월 말 까지로 한다.

제 24조 (예산편성)

1, 학생회장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이내에 예산을 편성하여 학생회총회를 거친 다음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편성한다.

2, 예산안이 소정 기일 내에 확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학생회장이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3, 예산 확정 후 사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단,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같은 조 1항의 과정을 준행한다.

제 25조 (결산)

학생회장은 회계연도 만료 2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부 칙 >

제 1조 (시행일)

본 회칙은 1999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시행세칙)

이 회칙은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학생 지도 위원회에서 정한다.